(제134회-내무위제2차부록)

의안 번호	783	【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제출자 : 2010. 10. 8(금) ·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0. 10. 11(월)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0. 10. 20(수)

2. 제안이유

가. 4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2011~2014년)은 지역주민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지방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득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계획기간 : 2011~2014년(4년간)

나. 계획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젼 및 목표

○ 지역사회현황 분석

○ 중점과제 선정

○ 중점과제 전략 수립

○ 개별보건 사업계획

○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4. 근거법규

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4조 제3항,제5조 제1항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조 생략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①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② 생략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①②생략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5. 참고 사항

○『지역보건법』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후 울산광역시 제출

6. 검토 의견

가.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 저출산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급속한 경제성장 등 변화되고 있는 환경속에서 우리 중구민의 보건의료수준 향상과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득하려고 하는 것임.

나. 이에

- 본 계획은 우리 중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 본 계획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중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다만,

- 본 계획이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주민과 밀접한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의료관련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사항과 이의 반영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